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1일, 최수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5.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수진의원)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

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출연금이란 행정주체가 출연 대상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함.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외에 '용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등의 책임성과 정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임.

용자금이란 국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용자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하는데, 출연금과 비교하여 용자를 하는 경우 환수된 자금을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8. 기타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원”을 “지원 또는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를 “지급과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융자의 대상, 절차, 상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생 략)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 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u> 할 수 있다.	② ----- ----- ----- ----- ----- ----- ----- <u>지원 또는 용자</u> -----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 금의 <u>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 위</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 ----- ----- <u>지급과 비용의 지원 범 위 및 용자의 대상, 절차, 상환 방법</u> ----- -----.